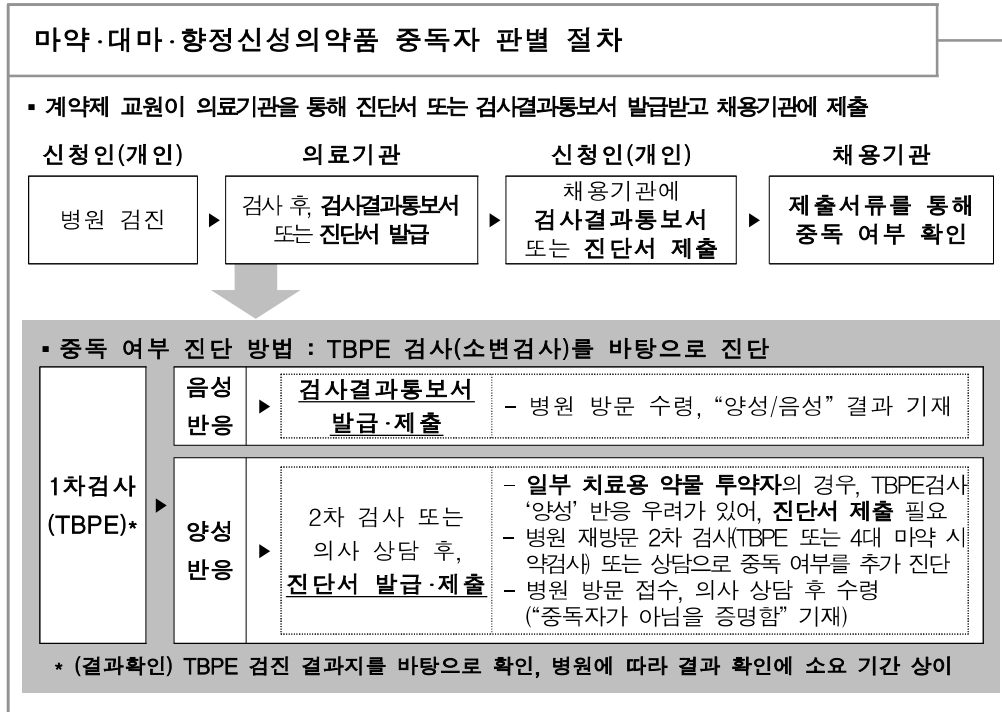


마약류 중독검사서(TBPE) 관련 공문

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



- (제출서류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
 - ※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‘양성’반응이 가능하므로,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‘의사의 진단서’를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
 - ※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‘마약류 중독자가 아님’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, 준용 가능
- (서류 유효기간) 1년
 - ※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(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, 기타 기관 문의 필요)
- (검진방법) 소변검사로 실시(혈액, X-ray 검사 방식도 가능)
 - ※ (TBPE검사)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(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)
 - (4대 마약 시약검사)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(검사 신뢰도 상승)
- (검진비용) 의료기관별 상이하나, TBPE검사의 경우 ‘검사결과통보서’는 약 5,000원~25,000원, ‘진단서’ 포함 시 약 15,000~35,000원 예상
 - ※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‘4대 마약 시약검사’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
- (검진기관)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,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에서 검사 후, 진단서 등 발급 가능(사전 예약 필요)
 - (법무부 지정기관)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*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, 검사 가능
 - * www.hikorea.go.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
 - ※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 검사 결과지 등)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, 반드시 사전문의 필요

□ 기타 사항

-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나 판별 등 실시는 계약제 교원 채용을 위한 필수 절차
-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서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